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

정연재**

요약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도덕적 논증의 기초가 된다는 문제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중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호소가 최종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을 명료화하여 이를 삶의 마지막에서의 의료적 돌봄에서 나오는 대표적 이슈, 즉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적용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적용 지점을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맞춘 이유는 첨단 과학기술의 경연장이 되고 있는 기술의학의 시대에 존엄성에 대한 정교한 접근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글은 의료윤리학자 Sulmasy의 논의를 토대로 존엄성 개념을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으로 구별하고 양자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속성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와 조력자살 찬성논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색인어

인간 존엄성, 내재적 존엄성, 속성적 존엄성,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교신저자: 정연재,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Tel: 02-3408-3953, Fax: 02-3408-3567, e-mail: hermes@sejong.ac.kr

* 이 논문은 2015년도 생명윤리관련 정책연구과제 자유공모에 선정되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I. 서론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탐색하기에 앞서서 ‘존엄성’ 때문에 삶을 종결지어야 하고, ‘존엄성’ 때문에 삶을 종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언급에 마주하게 된다. 존엄성 개념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찬반 논변 모두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 개념을 생명윤리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엄밀한 의미부여 작업을 유보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Schulman의 도발적인 지적은 생명윤리에서 존엄성 개념이 얼마나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나아가 존엄성 개념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왜 필요한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알츠하이머 진단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노인성 치매로 쇠약해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노인 환자가 좀 더 빠른 출구, 자신과 가족들에게 덜 고통을 주는 출구를 희망하여 자신의 심장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가능한 하나의 대답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치매를 수년 동안 앓을 것을 알게 된 환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환자가 복약을 하지 않고 심장 질환이 자신을 좀더 존엄하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한 대답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당기는 것은, 심지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 해도 모든 인간 생명에 기인하는 동등한 존엄과 존중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상당히 다른 결론

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호소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강조 필자)[1].

이와 같이 존엄성 개념은 생명윤리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이며, 이에 비례하여 비판의 움직임이나 강도가 훨씬 확대되고 높아지는 실정이다. 일례로 “존엄성”은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도덕적 논증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명료성의 결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념”(Sulmasy)이라든가[2] “존엄성 개념은 생명윤리적 성찰의 합의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어떤 도덕적 무게도 지니지 않는다”(Jotterand)거나[3] “자율성의 존중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쓸모없는 개념”(Macklin)[4] “문제는 존엄성에 대한 호소가 존엄성 개념에 대한 정의와 분석의 시도 없이 지속적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Macklin)[5] 등은 대표적인 비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생명윤리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존엄성 개념이 보다 명료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정교하게 구분하는 작업은 중요할 것이다.

본 글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모두에 존엄성이 호출된다면, 우리는 존엄성이라는 개념에서 도덕적 의미를 구성할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가? 존엄성을 둘러싼 의미적 혼란은 이 개념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의 노력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본 글은 존엄성의 개념적 정교화(conceptual clarification)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의도 아래 본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첫째, 존엄성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할 것이다. 의료윤리학자 Sulmasy의 구분을 토대로,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출처를 가

치론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개념 정의와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술할 것이다(2장). 둘째,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와 내재적 존엄성의 우선성을 규명한다(3장). 셋째, 내재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 조력자살 반대논변과 속성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 조력자살 찬성논변을 비교한 후, 내재적 존엄성의 우선성에 따라 속성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 조력자살 찬성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4장).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생명윤리 영역에서 적실한 존엄성의 의미를 가늠해볼 것이다.

II. 존엄성의 구분과 그 정의

존엄성은 생명윤리 영역에서 폭넓게 논의되는 가운데, 특히 인간 존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개념에 비판적인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존엄성 개념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존엄성 개념이 생명윤리 논쟁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개념 사용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약정적인 까닭에 존엄성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존엄성 개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Sulmasy의 분류법을 토대로, 존엄성 개념을 구분하고 구분된 존엄성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 내재적 가치와 내재적 존엄성

존엄성은 가치론적 맥락¹⁾에서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²⁾ 우선 내재적 존엄성(intrinsic Dignity)은 “자연종(Natural Kind)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내재적 가치”[2]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재적 가치는 사물의 내재적 본성과 우주 안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상 때문에 확보될 수 있는 가치로서, 사물 그 자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발견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내재적 가치는 오로지 보편적인 맥락에서 자연종에만 관계하지 개별자(개별적 대상)나 인공물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종에서 내재적 가치의 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종간에는 등급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간 종 내부에서 내재적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간과 나무 같이 서로 다른 종간에 비교될 경우에는 가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재적 가치는 단순내재적 가치(simple intrinsic value)와 상위내재적 가치(high intrinsic value)로 구분될 수 있으며, 내재적 존엄성은 바로 후자에서 비롯된다. 상위내재적 가치를 구성하는 특징, 다시 말해 내재적 존엄성을 구성하는 종전형적인(species-typical) 특징을 꼽자면, 언어, 합리성,

-
- 1) 일반적으로 가치는 유용성 여부와 관련하여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도구적 가치는 유용성과 관계한다. X가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이루는 데 사용된다. 반면에 내재적 가치는 유용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 때를 말한다.
 - 2) 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용례로 볼 때 역시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의 구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 간의 구분은 서양 근대 이후 인간 존엄성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칸트의 의무론적 전통과 후천적·관습적·상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게서 존엄성은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교환불가능한 내재적 가치로 이해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성 자체가 존엄성이며, 인간은 이성적 주체로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목적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갖는다. 반면에 영국의 경험론적 전통 아래서 존엄성은 일종의 시장가격에 의해 환산되는 상대적 가치에 불과하다. 일례로 흄스적 의미의 존엄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나 판단에 종속되는 가치로서 속성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사랑, 자유의지, 도덕적 행위, 미적 감수성 등 고차원적으로 발전된 능력들이다[2]. 그렇다고 상위내재적 가치의 소유 여부가 내재적 존엄성을 가능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상위내재적 가치는 동일한 종 안에서 등급을 설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재적 존엄성은 인간 존재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이다. 다시 말해 내재적 존엄성이란 특정한 속성, 타인의 평가,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값어치, 위상을 지시한다[6].

2. 속성적 가치와 속성적 존엄성

이에 반해 속성적 존엄성(attributed dignity)은 귀속의 행위를 통해 부여하는 값어치, 위상, 혹은 가치를 의미한다. 속성적 존엄성은 항상 ‘선택’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창조된 가치이며, 가치의 ‘관례적 형식’(conventional form)을 구성한다[2]. 예를 들어 “극단적인 빈곤은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때, 여기서의 ‘존엄성’은 ‘품위’와 같은 의미로서 속성적 방식에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의 가치는 가치평가자를 필요로 하는 가치로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되는 가치다[2]. 특히 내재적 가치가 단순 내재적 가치와 상위 내재적 가치로 구분되는 것처럼, 속성적 가치 역시 도구적 측면과 비도구적 측면을 고려하여 ‘속성적 도구적 가치’와 ‘속성적 비도구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속성적 존엄

성은 바로 ‘속성적 비도구적 가치’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부분집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속성적 존엄성의 범위를 자연종에만 국한시키고, 인공물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³⁾ 예를 들어 자동차는 출퇴근 용도로 사용될 때 도구적, 속성적 가치를 지니지만,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오래된 자동차가 미적 가치를 유발하여 수집용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 자동차는 속성적,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차를 속성적 존엄성을 가졌다고 부르지 않는다. 결국 속성적 존엄성이라 하더라도 내재적 존엄성을 애초부터 가지는 자연종과 관련하여 속성적 의미 맥락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속성적 존엄성은 속성적, 비도구적 가치의 부분집합이고, 내재적 존엄성을 가진 자연종의 성원들에게 부여되는 비도구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2].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에 대한 구분과 그 정의는 내재적 존엄성의 우선성을 토대로 양자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을 구분하는 기준과 출처를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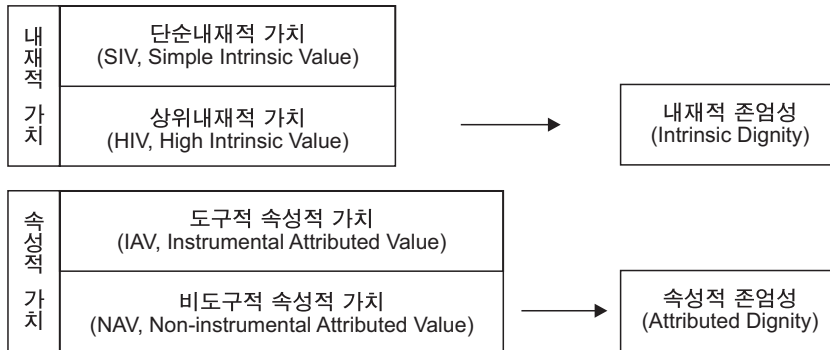
III.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의 연관관계

1. 내재적 존엄성의 우선성

Sulmasy에 따르면, 내재적 존엄성의 우선성

3) 이 점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을 옹호하는 Bostrom 같은 학자의 주장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Sulmasy는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속성적 의미에서조차 인간 존재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Bostrom은 “사람이 아닌 존재(non-persons)에게도 속성적 존엄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7]. 예를 들어 그는 바이오닉 수족 같은 인간-기계 장치나 무생물적 대상도 속성적 존엄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성적 존엄성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있다. 인간 본성의 가변성과 개선 가능성을 전제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맥락까지 고려한다면 ‘존엄성’의 출처와 의미를 확보하는 작업은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경우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다.

(Figure 1)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의 구분과 그 출처.



은 언어적, 논리적 측면에서 확보가능하다[8].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엄성 개념이 인공물이나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종에만 적용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속성적 존엄성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를 인간이라는 자연종의 한 성원, 즉 내재적 가치를 가진 종의 한 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어떤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속성적 존엄성을 감소시키거나 박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 그 개인을 인간 자연종의 성원으로서 받아들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그에게서 속성적 존엄성을 박탈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속성적 존엄성을 부여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개인을 내재적인 의미에서 존엄하다고 불릴 만한 자연종의 한 성원으로 선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존엄성이라는 단어의 속성적 사용의 논리와 문법은 그 존재의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속성적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재적 존엄성 개념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 존엄성의 우선성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6]. 이러한 우선성은 존엄성의 의미를 내재적인 맥락에서 확보하는 것이 도덕적 상식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일종의 일관성 논변(Consistency Argument)에서 확보가능하다. 다시 말해 존엄성의 일차적 의미를 속성적 맥락에서 확보하여 그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다시 말해 어떤 부류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류는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속성과 관련한 가치로 이해될 경우, 도덕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내재적 존엄성에 도덕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례로, 존엄성을 쾌락(행복)의 극대화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쾌락(행복)을 추구하는 품위 없는(undignified) 삶과는 정반대의 탁월한 삶 속에서 확보될 수 있는 존엄성의 교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존엄성을 흡수적 관점에서 시장가격에 좌우되는 상대적 가치로 파악할 경우, 가치가 떨어지는 무능력자들은 존엄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셋째, 존엄성을 합리적 선택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치로 이해할 경우,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존엄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존엄성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경우,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존엄성

의 규범적 의미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밀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존엄성을 내재적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2. 내재적 존엄성의 도덕적 함축

내재적 존엄성이 존엄성 개념의 일차적인 의미라는 결론은 매우 중요한 도덕적 함축을 가진다. Sulmasy에 따르면, 내재적 존엄성(상위내재적 가치)을 가진 자연종과 단순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자연종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종-전형적인 능력(species-typical capacity for moral agency)이다[2]. 이런 측면에서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도덕적 행위 주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나아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게도 도덕적 책무(moral obligation)를 갖는다. 이러한 도덕적 책무는 존엄성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윤리의 근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2].

- 원칙 1: 내재적 존엄성을 가진 자연종의 모든 성원들을 존중해야 하는 완전한 책무의 의무
- 원칙 2: 하나의 자연종에 내재적 존엄성을 부여하는 능력들을 존중하는 완전한 책무의 의무
- 원칙 3: 내재적 존엄성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신해야 하는 의무

- 원칙 4: 내재적 존엄성을 가진 자연종의 성원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성적 존엄성을 정립시켜야 하는 의무
- 원칙 5: 모든 다른 자연종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
- 원칙 6: 원칙 1-5를 수행하면서 완전한 책무의 의무는 다른 의무들에 구속력을 가져다주는 내재적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서 원칙 1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 정언명법의 목적성의 원칙(인격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원칙 1에서 4는 인간 존중(human respect)의 중요성을 세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칙 4와 6은 선행의 원칙과 악행금지의 원칙과 관련되며, 원칙 5는 환경윤리의 청지기 정신(stewardship)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6]. 결국 내재적 존엄성의 도덕적 책무를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 존재의 속성적 존엄성을 정립하는 작업이 내재적 존엄성의 존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2].⁴⁾

IV. 존엄성과 관련된 안락사와 조력자살 논변

의사조력자살은 삶의 마지막 돌봄에서 임상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특징적인 의료 실천이다[9]. 흔히 조력자살은 의사가 의사

4) Sulmasy는 인간 존재의 속성적 존엄성을 정립하는 의무는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기본적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2].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O'Mathúna 역시 내재적 존엄성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존엄하지 않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좀더 존엄한 삶을 경험하도록 도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 우리의 삶을 선물로 여기는 것은 여기서 도움이 된다. 선물로서의 삶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감을 가져다준다. 많은 것이 주어진 사람에게, 많은 것이 기대된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나 기쁨 이상의 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11]

결정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행하는 데 사용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생명유지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과 다르며, 더욱이 의사의 행위가 죽음의 간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이른바 의사가 실제로 환자를 죽이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며, 그 동기 역시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중첩적 요인이 의사조력자살을 아무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유형의 안락사를 수용하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10].

1. 일반적인 논변

주지하다시피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지지하는 논변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의사의 의무, 이른바 선행(Beneficence)의 원칙과 모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자기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의 원칙에 기반한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환자라면 설령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제안된 치료법을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치료를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 이에 기반하여 환자는 의사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전문직 역시 특정 조건 아래서⁵⁾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자율적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일종의 동정심(compassion)의 행위다. 특히 한 사람의 생명

을 종결짓는 결정은 단호하게 인격적이며 개인적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나 의료전문직에 의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9].

반면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원칙이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데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율성 존중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율성 자체가 자기정당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문직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안전하게 수호할 중요한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삶의 종말에 처한 환자에게서 고통을 유발하는 의료상황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경감 기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공유되는 무력감은 자살을 위한 조력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신뢰에 기반한 의사-환자 관계를 침해하며, 사회에서 수행해야 하는 치유자로서의 의료전문직의 역할과 선행에 기반한 의료실천을 왜곡시키는 행위다[9]. 주지하다시피 가장 큰 반대논거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범위를 한정짓고, 정교화한다고 하더라도 오용과 남용의 확대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존엄성에 기초한 논변

‘존엄성’이라는 단어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에서 사용되고 있다. 치

5) 일례로 비침과 칠드레스는 조력자살의 정당화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환자에 의한 자발적 요구, 의사-환자의 지속적 관계, 환자와 의사에 의한 상호적이며 충분히 고지된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적 환경, 대안들에 대한 숙고적 철회, 의학 영역에서 다른 다른 당사자들과의 구조적 협의, 환자에 의해 표명된 죽음에 대한 지속적 선호, 환자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고통,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안락한 수단의 사용이다[12].

명적으로 아픈 환자들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러한 행위야말로 ‘존엄한 죽음’(death with dignity)을 증진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인간이 소유한 기본적 존엄성(basic dignity)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두 개의 논변을 구성한다. 하나는 존엄성의 탁월한 의미, 즉 탁월성(Excellence)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존엄성의 내재적 의미에 기반을 둔 것이다. 두 개의 논변 모두 인간 존재의 속성적 존엄성에 닥칠 위기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 전자에 따르면, 인간 가치는 속성적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공격에 맞서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일 때, 다시 말해, 인간 유한성에 대한 겸허한 수용, 고귀함, 사랑으로 맞설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직면하여 조력 자살이나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존엄성으로써 ‘탁월하게’ 죽음을 맞서는 것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후자는 내재적 존엄성에 기반한 논변이며, 이는 앞의 탁월성에 기초를 둔 존엄성을 정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할 만큼 근본적이다. 어떤 상황도 내재적 존엄성을 제거할 수 없으며,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도덕성 자체의 근본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내재적 존엄성에 기반한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반대논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2]. 특히 다음의 명제 4와 6은 인간의 유한성과 의료실천에서의 실수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속성적 존엄성을 정립하려는 의무들이 바로 두 가지 측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1. 모든 개별적 인간 존재는 내재적 존엄성을 갖는 자연종의 한 성원이다.
2. 병들고 죽어갈 때, 인간 존재의 속성적 존엄성은 심각하게 공격받게 된다.
3. 죽어가는 인간 존재의 속성적 존엄성을 가능한 범위에서 세우는 것이 의료전문직의 의무다. (III-2의 원칙 4)
4.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의무(III-2의 원칙 4)는 불완전하다. 사실상, 질병과 죽음이 인간 존재에게 가져다주는 속성적 존엄성을 축소할 수 있는 모든 양상을 방지하고, 복원하고, 경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짐을 털어준다는 수단으로 속성적 비존엄성을 겪고 있는 인간 존재를 파괴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처음부터 속성적 존엄성을 세우는 의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내재적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III-2의 원칙 6)
6. 이는 사람들이 개별적 인간 존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재적 존엄성은 최상의 가치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한 가치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유한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유한성을 거부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

내재적 존엄성에 기초한 안락사와 조력자살 반대논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2]. 우선 반대측은 속성적 존엄성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의료전문직이 선행의 의무를 갖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환자의 외관, 독립성

유지, 죽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감 치료, 호스피스 등의 역할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명제 4와 6에서 나와 있는 인간의 유한성과 의료 실천에서의 실수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속성적 존엄성을 정립하려는 의무들이 바로 두 가지 측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의료전문직의 선행의 의무에는 도덕적 제한이 있는데, 한 사람의 속성적 존엄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속성적 존엄성의 기초인 내재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은 도덕적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인간이 직면하는 심각한 질병 등은 인간 존재의 속성적 존엄성의 심각한 손상, 즉 속성적 비존엄성(attributed indignities)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적 비존엄성의 제거는 의사의 책무이며, 속성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는 심지어 환자 자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안락사와 조력자살)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환자의 신체적 모습, 독립성의 정도, 사회적 가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등과 같은 특징들을 속성적 존엄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속성적 존엄성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등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환자의 상황이 악화될 때 속성적 존엄성 역시 감소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궁극적 해법은 안락사

와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다[2].

주목해야 할 것은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내재적 존엄성조차도 속성적 의미로 이해하면서, 내재적 존엄성에서 나오는 도덕적 책무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내재적 존엄성을 인간 자연종 내의 한 부류의 특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특징을 잃어버린 인간 존재에게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내재적 존엄성을 가진 자연종의 개별적 성원을 결코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책무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논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내재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안락사, 조력자살 반대 논변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내재적 존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내재적 존엄성을 내재적 가치의 위계 속에서 최상위 단계로 설정하는 설매시의 시도는 ‘중차별주의’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내재적 가치의 등급 설정은 인간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중차별주의의 윤리적 반경을 확대하여 반(反)중차별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주장하지만,⁶⁾ 상위내재적 가치, 즉 내재적 존엄성을 이루는 종전형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자연종을 생태계

6) Sulmasy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내재적 가치의 등급을 설정하고 상위 등급의 내재적 가치를 내재적 존엄성으로 보는 것 자체를 중차별주의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내재적 가치의 등급 설정은, 내재적 존엄성의 지니는 존재의 윤리적 책무(III-2에 나타난 원칙 6)로 보자면, 중차별주의의 윤리적 반경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 내재적 존엄성은 인간 자연종 내의 한 계급의 특징이 아니다. 내재적 가치는 자연종에 속하지, 개별자들의 계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례로 정신착란증 환자의 내재적 존엄성과 정상인의 내재적 존엄성은 동일하다. 물론 이 둘의 속성적 존엄성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위 내재적 가치인 내재적 존엄성의 지위를 부여하는 이성, 도덕적 행위, 창의성 등은 병이나 사고에 의해 손상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그것의 내재적 존엄성을 복원하거나 존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내재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유일한 방식이 그를 안락사(조력자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마을을 구해내기 위해 마을을 파괴한다”는 베트남 전쟁의 추정적 논리와 유사한 구조라는 것이다[2].

에서 정점에 두는 등급매기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유정적 존재’(sentient creation)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공리주의적 시도가 여전히 설득력 있게 작동하는 부분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재적 존엄성을 이루는 종전형적 특징들, 예를 들어 언어, 합리성, 사랑, 자유의지, 도덕적 행위능력, 창의성, 미적 감수성은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쪽에서처럼 충분히 속성적 맥락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설매시는 정신착란증세를 지닌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과 철학자의 내재적 존엄성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내재적 존엄성을 이루는 종전형적 특징들은 인간 자연종 내의 특정 계급이나 부류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술어들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언어적 맥락에서 충분히 속성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는 쪽에서 내재적 존엄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치론적 맥락에서 존엄성을 구분하고자 하는 Sulmasy의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존엄성 개념의 애매한 사용에서 기인하는 불필요한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됨으로써 존엄성에 기반한 논증이 훨씬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찬반논변의 도덕적 기초를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V. 결론: 적실한 존엄의 가능성을 찾아서

Antiel 등은 미국 현직 의사를 대상으로 삶의 마지막 돌봄에서의 존엄성 문제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13].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존엄성 개념이 임상 의료에 있어서 실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존엄성의 ‘기원’과 관련하여 존엄성이 신(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견해에 46%가 동의했고, 존엄성의 ‘동등성’과 관련하여 모든 인간은 동일한 양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응답자의 53%가 동의했고, 존엄성의 ‘자율적 측면’과 관련하여 존엄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선택을 감행하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응답자의 73%가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존엄성의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존엄성 전체가 상실될 수 있다에 36%가, 존엄성의 일부만이 상실될 수 있다에 43%가, 존엄성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에 21%가 동의했다. 이와 유사하게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응답자의 33%가 도덕적 반대를 하지 않았고, 34%가 온건하게 도덕적 반대를 표명했고, 33%가 강하게 도덕적 반대를 하였다.

결국 존엄성을 영속적이고, 동등한 것이며, 선택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은 결국 내재적 의미에서 존엄성을 파악한 것이고, 존엄성을 변하기 쉬운 것으로, 자율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의사들은 속성적 의미에서 존엄성을 파악한 것이다. 문제는 일관성 문제다. 앞선 통계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전문직조차 존엄성 개념의 정교한 구분을 토대로 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전문직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삶의 마지막에서 바람직한 의료적 실천과 돌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존엄성에 대한 정교한 이해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존엄성 개념이 안락사 조력자살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도덕적 논증의 기초가 된다는

문제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호소가 최종적인 근거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출발점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본 글은 Sulmasy의 논의를 중심으로 내재적 존엄성과 속성적 존엄성 간의 구별, 그리고 양자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속성적 존엄성을 기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찬성하는 논변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자 했다.

존엄성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은 존엄성 개념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 존재의 존엄성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덕적 의미를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도덕적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엄성은 어떤 존엄성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속성적 존엄성은 이러한 책무를 담당하기에는 허약해 보인다. 결국 내재적 존엄성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존엄성이 내재적 맥락에서 인정될 때만이 ‘주어진’ 삶에 대한 겸허함과 유한성에 대한 통찰이 나오고, 바로 이것이 타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관심과 도움으로 이어진다”는 오마수나의 주장[11]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생명윤리와 생명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본윤리원칙”에 나타난 존엄성 개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존엄성은 내재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상호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존엄성은 우주 안에서 인간 개체의 탁월한 위상을 표현한다. 즉 합리적 행동 아래서의 자율과 공정한 제도 속에서 타인과 함께, 타인을 위해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갖춘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의 삶에서의 불가침한 존중이다.”[14] 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동적 삶에서 확보되는 상호주관적 측면의

존엄성은 우리가 생명윤리 담론에서 적실한 존엄성의 범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차원의 것이다. ☉

REFERENCES

- 1) Schulman A. Bioethics and the Question of Human Dignity, Human Dignity and Bioethics: Essay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hinton, D.C., 2008: 5.
- 2) Sulmasy DP., Death, Dignity, and the Theory of Value, Ethical Perspectives, 2002; 9(2): 103-130.
- 3) Jotterand F. Human Dignity and Transhumanism: Do Anthro-Technological Devices have moral status,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2010; 10(7): 47.
- 4) Macklin R, 2003. Dignity is a useless concept, BMJ 2003; 327(7429): 1419.
- 5) Macklin R, The new conservatives in bioethics: Who are they and what do they seek? The Hastings Center Report 36(1): 37.
- 6) Sulmasy, DP. Dignity and Bioethics: History, Theory, and Selected Applications, Human Dignity and Bioethics: Essay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hington, D.C., 2008: 479-482.
- 7) Bostrom, N. Dignity and Enhancement, Human Dignity and Bioethics: Essays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hinton, D.C., 2008: 175-176.
- 8) Sulmasy, DP. The varieties of human dignity: a logical and conceptual analysis, Med Health Care and Philos 2013; 16: 937-944.
- 9) Snyder L, Sulmasy DP. Physician-Assisted Suicid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1; 135(3): 209-214.
- 10) Kelly DF. Medical Care at the End of Life: A Catholic Perspective, Georgetown UP, 2006. 한국어판: 데이비드 켈리. 생의 마지막에서의 의료적 보살핌. 서울: 아카넷, 2011: 161-179.
- 11) O'Mathúna, Dónal P. Human Dignity and the Ethics of Human Enhancement, Trans-Humanities, Vol. 6. No. 1, Feb. 2013: 114.
- 12) Beauchamp Tom L. & Childress, James F.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Oxford.

1994: 240

13) Antiel RM et al., Dignity in end-of-life car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of US physicians. *J Pain Symptom Manage.* 2012; 44(3):

331-339.

14) European Commission. Basic ethical principles in bioethics and biolaw 1995-1998, 1999.

Clarifying Appeals to Dignity at the End of Life: An Analysis of the Arguments for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JEONG Yeonjae**

Abstract

The concept of dignity receives much attention in biomedical ethics, especially with respect to care at the end of life. Paradoxically, the concept is used in moral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contemporary concept of dignity. More specifically,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and show its relevance to arguments for the legitimacy of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Additionally this article offers guidelines for the appropriate role of dignity considerations in debates concerning end-of-life care.

Keywords

attributed dignity, euthanasia, intrinsic dignity, human dignity, physician-assisted suicid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in 2015.

** Faculty of General Education, Sej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